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1104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 2021. 4.1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 2023. 7. 5.

지쿠터(Gcooter)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지바이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1 . . .

[주식회사 지바이크]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길 28, 12층

[대표전화] 1833-5748

[전화번호] 1833-5748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7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1	12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1	13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19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3	37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39

[별첨 1] 재무상태표

[별첨 2] 손익계산서

[별첨 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 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기	J	주 소					
	지쿠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길 28, 12층					
/ * \T U O ¬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지바이크	2017.8.3.		2017.8.11.	윤종수	등수 1833-5748		_	
	법인등록번호	13111	1-0489483	사업자등록	특번호	727-	-88-0086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윤종수 (주)지바이크	지쿠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길 28, 12층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윤종수	1833-5748	_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지쿠터]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지쿠터(Gcooter)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상 호	지쿠터 OOO점	
상표(서비스표)	지쿠터 gcooter	출원번호 : 40-2020-0096089
그 밖의 영업표지	_	_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 익
2020년	10,145,463	5,697,592	4,447,870	11,228,381	1,782,101	1,864,441
2021년	38.351,929	26,142,549	12,209,380	33,534,819	220,828	-302,564
2022년	45,019,652	23,535,960	21,483,691	52,207,920	8,283,335	7,285,199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건어브		된 지이		사업경력	
P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윤종수	대표이사	2017.8. [~] 현재	㈜지바이크 대표	㈜지바이크 총괄
가맹사업	김기병	감사	2017.8. [~] 현재	감사	비상근
관련임원	정혜승	사외이사	2020.7. [~] 현재	사외이사	비상근
	배기홍	사외이사	2020.7. [~] 현재	사외이사	비상근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	임원=	수(명)	지이스/대)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2년 12월 31일	1	3	24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지쿠터]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신청 일자		출원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지쿠터 (Gcooter)	상표	2020.6.8. 출원	출원 40-2020 -0096089	(주)지바이크	2031년 05월 04일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지쿠터] 가맹사업 현황

1. [지쿠터] 를 시작한 날: 2021년 5월 1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9년 1월 3일)

2. [지쿠터]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바이크	지쿠터	윤종수	2021.5.11. ~ 현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길 28, 12층

3. [지쿠터] 업종

영업표지	업종					
דו ארו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지쿠터 	서비스	자전거 쉐어링 서비스업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지쿠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2	020.12.3	1.	2021.12.31.			2022.12.31.		
지역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10	-	10	55	31	24	58	33	25
서울	1	1	1	1	_	1	2	_	2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1	_	1	2	1	1	2	1	1
인천	2		2	4	2	2	4	2	2
광주	2	-	2	4	2	2	4	2	2
대전	_	_	_	2	1	1	2	1	1
울산	_	-	_	_	_	_	_	_	_
세종	1	1	1	1	_	1	1	_	1
경기	3	ı	3	16	7	9	19	11	8
강원	_		_	4	2	2	4	2	2
충북	_		_	1	_	1	1	_	1
충남	_	1	_	3	3	_	5	4	1
전북	_	_	_	7	7	_	6	6	_
전남	_	_	_	3	2	1	2	1	1
경북	_	_	_	3	1	2	3	1	2
경남	_	1	_	2	2	_	1	1	_
제주	_	_	_	2	1	1	2	1	1

*가맹계약 체결일('21. 5. 11.)을 기준으로 가맹점 수를 산정하였고, 이전 '플랫폼 이용계약'에 따라 당사로부터 전동킥보드를 구매한 후 자유롭게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합니다)들은 제외하였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지쿠터]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0	0	0	0	0	0	0
2021	31	31	0	0	0	31
2022	31	5	3	0	0	33

*가맹계약 체결일('21. 5. 11.)을 기준으로 가맹점 수를 산정하였고, 이전 '플랫폼 이용계약'에 따라 당사로부터 전동킥보드를 구매한 후 자유롭게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합니다)들은 제외하였습니다.

6. [지쿠터]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지쿠터]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지쿠터] 공유킥보드 사업특성상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평당 매출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2년 연간 평균 매출만을 기재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						
지역 2022년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 체	33	499,604	_	2,926,006	_	39,923	_	6개월 미만 업체 제외
서울	_	-	_	_	_	_	_	_
부산		-	_	_	_	_	_	_
대구	1	_	_	_	_	_	_	5곳 미만
인천	2	_	_	_	_	_	_	5곳 미만

광주	2	_	_	_	_	-	_	5곳 미만
대전	1	_	_	_	-	_	-	5곳 미만
울산	_	_	-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경기	11	527,411	ı	2,262,615	-	85,653	ı	일산,의정부, 처인구,동두 천 (6개월미만)
강원	2	_	_	_	_	-	_	5곳 미만
충북	_	_	_	_	_	_	_	5곳 미만
충남	4	_	_	_	_	-	_	5곳 미만
전북	6	694,904	_	2,926,006	_	136,994	_	고창 (6개월미만)
전남	1	_	-	_	_	_	_	영광 (6개월미만)
경북	1	_	_	_	_	_	_	5곳 미만
경남	1	_	_	_	_	_	-	5곳 미만
제주	1	_	-	_	_	-	_	5곳 미만

(위 표는 당사의 2022년 12월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다.)

8. [지쿠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지쿠터]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2	33	35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 및 지역 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2년]에 [지쿠터]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목차[V-8]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	비고		
十正	7E 7E	712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미끄
합계	_	_	50,165	50,165	-	-
광고	(비공개)	연중	50,165	50,165	_	_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운영하여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지바이크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금의 수령절차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4]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지쿠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 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0,000				
가입비	8,000	가맹계약시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가맹점 오픈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상권분석 ·가맹사업 운영 매뉴얼 제공비 ·인력지원 등
교육비	2,000		교육 미제공	교육 개시 이후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0	계약시	가맹금 미지급, 상품대금, 채무액 등	가맹계약 해지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운영하므로 귀하는 가맹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으로 대체되는 예치가맹금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입비	8,000		
교육비	2,000		
계약이행보증금	0		
합계	1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670 x 대수	해당없음			
전동킥보드 (대당)	가맹본부	1,200	_	계약시 50% ● 생산완료		신모델
추가배터리 (대당)	가맹본부	420	_	50% (또는 할부금에 따라 10%를 가산한 금액을	발주 전 계약취소	출시의 경우 가격 변경
충전기	가맹본부	50	_	12개월 분납)		

(대당)			

(할부금액의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필수구매품목의 소유권은 가맹본부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은 원자재 가격, 모델 변동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의 가맹점 운영에 매장, 필수설비(정착물)나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은 관계로, 면적당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점 입점 위치 확정	당사는 경험을 바탕으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개점 전 교육과정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차량필요·운전면허증 소지 (운전면허 없는 경우 종업원이 소지)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지쿠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설비는 없습니다.

8) 가맹금 분납 제도

가맹금 분납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목차[V-8]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워 부가세 포함)

	(난위: 원, 무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경영지원 및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판매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에 명시	다음 월 8 영업일 내	과오납시	정상적산출	
리스료 (상품대금분납)	가맹본부	할부금(+가산)의 12개월 분납	다음 월 8 영업일 내	과오납시	정상적산출	분납의 경우 적용
기본보험료	가맹본부	47,000(대당)	자동정산	과오납시	정상적산출	1년
건당보험료	가맹본부	100(탑승건당)	자동정산	과오납시	정상적산출	
통신료	가맹본부	6,000(대당)	매월	과오납시	정상적산출	유 / 무
특별교육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미실행	교육제공	(관련법개정 등) 교육 필요 시 실시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6%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과오납시	정상적산출	대금 등 연체 시
광고분담금	해당없음					
판촉분담금	해당없음					

(※ **경영지원 및 상표사용료**의 경우 지역상황에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당사는 귀하가 영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당사가 소유한 기기를 임대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기기 임대 시, 계약기간은 3년이며, 가맹점사업자는 임대 기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책임지며, 지바이크에게 운영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리, 정비를 위한 부품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구매합니다. 킥보드의 분실, 파손, 고장 등으로 해당 킥보드가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킥보드 가격에서 그 시점까지 운영된 개월 수에 3만원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120만원 - 운영개월수*3만원)을 지바이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바이크가 임대 기기 운영의 대가로 지급하는 "앱 운영"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 2.8%를 제외한 월 매출의 일정비율로 정합니다. '기본보험료'(대당 47,000원)는 첫 달(예> 8월의 시작의 경우 매해 8월)에 발생한 매출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앱운영" 수수료의 비율만큼 부담하며, '건당 보험료'는 탑승

건당 100원씩 매월 발생한 매출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앱운영"수수료의 비율만큼 또는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의 (2022)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기준: 2022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2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주에게 판매하는 기기 판매가가, 가맹본부가 기기를 구매하는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액가맹금의 마이너스 수치가 산출되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서 목차[V-7-4)]에 나와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 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 지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승인을 얻어서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 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정보공개서 목차[V-6-2)]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당사의 영업비밀, 사업내용, 고객정보 등을 누설하는 등 가맹본부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지쿠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지쿠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지쿠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 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 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지쿠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지쿠터 서비스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구두+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2021.5.12.까지 : 만 18세 이상				
2021.5.13.이후 : 만16세 이상의 면허소지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지쿠터 서비스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지쿠터 서비스	180 (1분)	변동 시 공지	2022.12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는 운영지역 내에 "배치권"을 갖는 전동킥보드의 대수 상한 (총 전동킥보드 대수 상한 및 해당 가맹점사업자의 전동킥보드 대수 상한)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서로 고지 합니다. 대수 상한은 해당 운영지역의 가맹점주안 혐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을만 집중 점계	가맹본부	계열회사
공유 전동 모빌리티	지쿠터	_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기준점 중심으로 '행정구역 동'으로 정하며, 상호 동의하에 기준을 넓히거나, 위치 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학교, 역사, 공항, 위락지 등)은 상권에 따라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 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 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지쿠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2	26.88%	73.12%	0%	0%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맹점 직영점 모두 지쿠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됩 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2	0%	0%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맹점 직영점 모두 지쿠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됩

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지쿠터]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갱신 시 계약기간도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В.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6조 ①
○ [지쿠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 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 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29조
○ 가맹점사업자가 협의없이 점포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제37조

○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한 판매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 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영업을 미개시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상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조치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동종영업을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제39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무단 양도하는 경우	제34조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u>아래의 경우</u>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Ó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Ó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제37조 제2항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 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 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 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1833-5748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 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 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운영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 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 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대리행사	해당사항 없음			
업무위탁	해당사항 없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동안 귀하가 [지쿠터]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 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1833-574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지쿠터]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킥보드 서비스에 대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영업시간	영업일수	มอ
1일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영업	문의 1833-574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	----------	----

점포별로 상이	지저 그ㅁ	점주의 배우자,	문의
검포필도 성이	직접 근무	직계가족 등	1833-5748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방문점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지쿠터]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광고대금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78	광고	부담비율		보다 저지	шп	
구분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상품광고	100%	0%	가맹점 분담의 경우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0%	가맹점 분담의 경우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대중매체 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0%	별도 절차 없음		
판촉행사	(향후	해당사항 없음 ^호 진행 시 사전통지)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최종분담금 확정	지역단위 및 점포고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6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 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6~45(2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5		
가맹금 예치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증서 전달	D-45	IV-1참조
점포 확보 확인	- 점포 확보 여부 확인	D-14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3일	₩ 참조
상품	- 상품 입고	D-1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 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 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 어 등의 노 후화가 객관 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 전의 결함으 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어렵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 기의 교체비 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 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 맹점사업자가	◆ 점포의확장 또는이전을상장 포환개선: 20%◆ 점포의는수장 또의는수한 증가는한환경개선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 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 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당 (계약의 당양 포함)되는 공 우 다액 중 어기간에 부담 데하는 부담	

거나 정상적	추가 공사를	: 40%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액은 지급하
인 영업에	실시함에 따		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아니하거
현저한 지장	라 소요되는		지정한 자를 통하여	나 이미 지급
을 주는 경	비용은 제외)		점포환경개선을 한	한 경우에는
우			경우에는 점포환경개	환수 가능
			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 총 부	
			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 총 부	
			다 60일 어대, 8 부 담액의 40%)	
			ロコー 40/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가맹본부 부담	문의: 본사 (1833-5748)

		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시		
가맹점사업 자 요청 시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 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시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지쿠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vat 포함)	มอ
신규 교육	3일	2,000	최초 계약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2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2년1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2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³
1,579,118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 재한 것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